

##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

사후관리 2024-03-05 1,161

### [질문]

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가 궁금합니다.

### [답변]

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,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,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합니다. 다만,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합니다.

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합니다.

### [관련 근거]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35호(2018.7.2.) “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”

[이전글](#)

[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점검](#)

[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](#)

[다음글](#)

[스크랩](#)

[목록](#)